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 - 52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현재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이 「인천광역시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
- 따라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수질검사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9조의2)
- 수질검사 수수료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따르도록 함(안 제39조의3)

-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9조의4)
- 수질검사 수수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9조의5)
- 검사성적서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9조의6)
- 「인천광역시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도록 함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 9. 2.(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4,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붙임자료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필요”를 “필요한 사항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에 관하여 필요”로 한다.

제39조의2의 제목 “(수질검사와 수수료)”를 “(수질검사 의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의뢰서와 검사 대상물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
2.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
4. 수돗물의 정수처리와 관련한 원생동물 검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검사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의 봉인·봉합이 없을 때(다만, 참고용 검사의 경우에는 제외)
2. 봉인·봉합이 훼손되어 있을 때
3. 검사대상물이 검사에 필요한 양보다 부족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수수료 등) ①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뢰자는 「국립 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에서 정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의뢰자는 수질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소요되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 등의 징수는 본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9조의4(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질검사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 감면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보 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의5(수수료 등의 반환) 시장은 수질검사 시작 전에 검사의뢰가 취소된 경우 납부된 수수료와 검사대상물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집행된 실비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하여 그 차액만 반환할 수 있다.

제39조의6(검사성적서 교부) ① 시장은 제39조의2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의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의뢰자에게 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검사성적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의뢰자는 검사성적 결과를 광고나 선전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성적서 전문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완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검사성적서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수질검사 의뢰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수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필요한 사항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에 관하여 필요 --.
제39조의2(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도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9조의2(수질검사 의뢰 등) ① 다음 각 호의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의뢰서와 검사대상물을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 2.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 4. 수돗물의 정수처리와 관련한 원생동물 검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검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와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의 봉인·봉합이 없을 때(다만, 참고용 검사의 경우에는 제외)
2. 봉인·봉합이 훼손되어 있을 때
3. 검사대상물이 검사에 필요한 양보다 부족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39조의3(수수료 등) ①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의뢰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에서 정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의뢰자는 수질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소요되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 등의 징수는 본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9조의4(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질검사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의 수수료 감면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의5(수수료 등의 반환) 시장은 수질검사 시작 전에 검사의뢰가 취소된 경우 납부된 수수료와 검사대상물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집행된 실비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하여 그 차액만 반환할 수 있다.

제39조의6(검사성적서 교부) ① 시장은 제39조의2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의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의뢰자에게 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검사성적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의뢰자는 검사성적 결과를 광고나 선전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성적서 전

제53조(권한의 위임) ①·② (생략) ③ <u>본부장은 제39조의2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와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에 관한 권한을 수질연구소장, 정수사업소장, 강화수도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다.</u>	<u>문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완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u> 제53조(권한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u><삭제></u>
---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수수료 면제 및 감면 조항에 따른 세입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2013년 수질검사 수수료 세입 : 21,625,600원
 - 2014년 수질검사 수수료 세입 : 30,778,550원

4. 작성자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곽 영 주